



## 북경 쟈예 공정 디자인 소프트웨어 연구원 VS 웨인 등의 상 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 02

####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 사건번호  | (1998)高知终字 第9号 |
| 판결 일자            | 1998년 5월 18일   | 판결 결과 | 상소기각(권리자 패)    |
| 원심원고(상소인)        | 1. 북경 쟈예 공정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원                                      |       |                |
| 원심피고(피상소인)       | 1. 북경 리정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원, 2. 웨인, 3. 가오샤오쥘, 4. 후한쥘, 5. 천웨이        |       |                |
| 참조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       |                |
| 영업비밀             | TBFECAD 시스템과 TBSACAD 시스템의 기술정보, 고객명단                           |       |                |
| 키워드<br>(Keyword) | 상업비밀의 내용과 구체적인 범위(商业秘密的具体内容和范围), 경업금지 의무(竞业禁止义务), 경제적 보상(经济补偿) |       |                |

####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쟈예 연구원은 건축 관련 디자인 소프트웨어 공사로서, 《고층 및 다층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 컴퓨터 디자인 시스템》 V3.0과 《지반 기초 구조 컴퓨터 보조 디자인 시스템》 V2.0을 개발하였으며, 1992년, 1996년에 각각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를 하였다. 원심 피고 북경 리정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소(이하, 리정소)는 웨인 등 네 사람에게 의해 1995년 5월 설립되었으며, 기술 개발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쟁예 연구원은 전 직원이었던 웨인 등 4인에 의해 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쟈예 연구원은 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리정소가 개발한 FCAD 소프트웨어 제품이 쟈예 연구원의 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쟈예 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쟈예 연구원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 03 주요 쟁점

| 원심 원고(상소인)                             | ⇔ | ⇐ | 원심 피고(피상소인)   |
|--|---|---|---|
| 젠예 연구소는 유효한 영업비밀(기술비밀+ 경영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   |   | 리정소가 작성한 고객 명단은 공공의 경로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다.  |
|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   |   | 기술비밀과 관련하여 젠예 연구원이 제공한 ‘TBFECAD 시스템과 TBSACAD 시스템의 기술내용과 요소’ 중에 구체적인 기술방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기술비밀)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 리정소가 젠예 연구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   |   | 리정소는 영업비밀을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

### 04 판결 요지

영업비밀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권리인은 소송을 요청한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만 한다. 본 사건에서 젠예 연구원은 법원에 자신의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술비밀과 관련하여 젠예 연구원은 ‘TBFECAD 시스템과 TBSACAD 시스템의 기술내용과 요소’만 제공하였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기술방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젠예 연구원이 주장하는 기술비밀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리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젠예 연구원이 또 다른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고객명단은 공공 출판물 <중국 공정조사 설계공사 목록>에 출처를 두고 있고, 이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므로, 경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법적이고 유효한 경업금지 계약이나 조항은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즉, 공사는 자신의 영업비밀과 경쟁 우세 항목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공사와 업무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제한 약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원심 원고 젠예 연구원은 웬인, 가오샤오쥘, 후한쥘, 천웨이야 합법적이고 유효한 경업금지 계약이나 조항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경제적 보상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경업금지 요구를 할 수 없다.

---

중국에서건, 한국에서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의 내용을 특정하고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업비밀’의 경우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권리자는 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실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중국법원도 한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이고 유효한 경업금지 계약이나 조항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그러면서, 공사가 이와 같은 경업금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본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및 경업금지 약정을 함에 있어서, 향후 법정에서 약정에 의한 경업금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